

제1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(제2차 본회의)

2011. 6. 16.(목) 10:00~

조례안 심사보고서

= 녹색공간거창농산물대축제 운영조례안 등 4건 =

산업건설위원회

【 목 차 】

1. 녹색곶간거창농산물대축제 운영조례안	-----	2
2.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안	-----	5
3.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	-----	10
4.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안	-----	15

녹색곶간거창농산물대축제 운영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년 5월 30일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년 5월 30일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년 6월 10일

2. 제안설명 및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우리 고향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청정 거창의 이미지를 제고하고, 지역 농산물을 축제의 주제로 개발 및 승화시켜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녹색곶간거창농산물대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임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축제의 명칭, 주관 및 개최시기에 관한 사항을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함.
(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)

- 축제의 기본운영 방향과 세부추진계획의 수립, 축제에 관한 자료의 수집·분석 및 조사·연구, 축제행사의 진행, 축제의 평가 및 결산 등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설치하는 녹색공간 거창농산물대축제위원회의 구성과 그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 규정함.
(안 제5조부터 제17조까지)
-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축제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축제의 평가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함.
(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조례안은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청정거창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농산물을 축제의 주제로 개발 및 승화시켜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녹색공간 거창농산물 대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「녹색공간거창농산물대축제 운영조례안」을 신규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됨
-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
 - (1) 안 제1장 총칙(목적 및 정의, 축제의 명칭, 축제주관 및 개최시기)은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또한 축제주관과 개최시기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필요조항이며

- (2) 안 제2장(설치 및 기능, 위원회의 존속기한, 구성, 위원의 임기 및 해촉, 위원장의 직무, 회의, 축제감독, 분과위원회, 간사,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, 조사·연구의 의뢰, 수당 등, 운영세칙)은 녹색공간거창농산물대축제위원회의 설치와 기능, 위원회의 존속기한, 구성, 위원의 임기 및 해촉, 위원장의 직무, 회의, 축제감독, 분과위원회의 구성, 간사,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, 조사·연구의 의뢰, 수당과 운영세칙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- (3) 안 제3장(경비의 지원, 평가 및 결산, 시행규칙)은 경비의 지원 및 평가, 결산방법과 시행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
- (4)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 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 요지: 해당없음
6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8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년 5월 30일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년 5월 30일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년 6월 10일

2. 제안설명 및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거창명품 사과를 주제로 한 관광과 체험, 교육, 홍보, 판매 등 종합 기능을 갖춘 대한민국 최고의 사과 메카 육성을 위하여 조성한 거창사과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, 사과테마파크의 주요 시설과 그 소재지를 규정함(안 제1조, 제2조)
 - 사과테마파크
 - 체험시설: 고제면 봉계리 일원
 - 공원시설(전시관 포함): 거창읍 정장리 일원

- 사과테마파크의 수행 업무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
 - 사과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
 - 전시물의 발굴·수집·보존·관리 및 전시
 - 사과테마파크 이용자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설·운영
 - 사과테마파크 시설의 관리 및 운영
 - 그 밖에 사과테마파크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- 사과테마파크의 개관 및 휴관일과 관람 및 이용시간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, 제6조)
 - 개 관: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여 운영
 - 휴관일
 - 매주 월요일, 매년 1월 1일, 설·추석연휴
 -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날
 - 관람 및 이용시간: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

- 사과테마파크의 입장료와 체험시설 또는 전시관 이용자의 재료 구입 등에 따른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)
 - 입장료: 무료
 - 이용료: 이용자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실비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음

- 사과테마파크의 관람 및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서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과 사과테마파크에서 제한하는 행위 및 이용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(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)

- 전시물의 수집 방법과 절차,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사과테마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·물적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등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(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)
 - 전시물의 수집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법인·단체 및 개인의 기증에 의하되, 전시물을 직접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 또는 감정을 받아 구입함
 - 전시물을 기증하려는 자는 '전시물 기증서'를 군수에게 제출하고, 군수는 '기증증서'를 기증자에게 발급하며, 별도의 '관리대장'을 기록·관리하도록 함
- 사과테마파크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사과테마파크 부지 안에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, 사과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의 근거, 운영위탁의 신청 및 수탁자의 선정과 협약체결, 위탁기간과 그 기간의 갱신, 운영위탁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의 지원, 수익이 발생하는 체험시설의 운영 위탁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와 납부방법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4조, 제15조)
- 그 밖에 사용료의 징수, 사과테마파크의 관리·운영 및 운영위탁에 관한 준용 규정을 둠(안 제1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조례안은 거창명품 사과를 주제로 한 관광과 체험, 교육, 홍보, 판매 등 종합기능을 갖춘 대한민국 최고의 사과메카 육성을 위하여 조성한 거창사과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여 「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안」을 신규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반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

-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
 - (1) 안 제1조 ~ 제2조(목적 및 정의)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한 사항으로 필요조항이며
 - (2) 안 제4조 ~ 제6조(업무 및 기능, 개관 및 휴관 관람 및 이용시간)는 사과테마파크의 업무와 기능, 개관일과 휴관일 지정, 관람과 이용시간을 규정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
 - (3) 안 제7조 ~ 제8조(입장료 및 이용료, 입장의 제한)는 입장료와 이용료의 장수범위와 입장 제한자를 지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 - (4) 안 제9조 ~ 제11조(행위의 제한, 이용자의 책임, 전시물의 수집)는 사과테마파크 안에서의 제한되는 행위와 이용자의 책임한계, 전시물의 수집 방법을 명시한 것으로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됨
 - (5) 안 제12조 ~ 제14조(전시물의 관리, 보험가입, 판매 및 편의시설의 설치·운영)는 전시물의 관리방법, 보험가입, 판매 및 편의 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됨

(6) 안 제15조 ~ 제16조(운영위탁, 준용)는 사과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구체적인 선정방법을 명시하고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

(7)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 요지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<의안번호 제2011 - 31>

〔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〕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년 5월 30일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년 5월 30일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년 6월 10일

2. 제안설명 및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천적생태에 대한 체험 및 학습의 기회와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자연생태계 보호의식을 고취하고,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법을 실천하기 위하여 설립한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과학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규정함(안 제1조 제2조)
 - 명 칭 : 거창천적생태과학관
 - 위 치 :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819-10번지 일원

- 과학관이 수행하는 업무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
 - 천적생태체험을 통한 자연생태계 보호의식 고취
 - 천적에 관한 자료의 발굴·수집·보존·관리 및 전시
 - 천적에 관한 전문적·학술적인 조사·연구
 - 천적을 이용한 체험·탐구·교육프로그램의 개설·운영
 -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- 과학관의 개관 및 휴관일과 관람시간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, 제5조)
 - 개관 :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여 운영
 - 휴관일
 - 매주 월요일, 매년 1월 1일, 설·추석연휴
 -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날
 - 관람시간: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

- 관람료의 기준과 관람권의 발급 및 관람료의 면제대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, 제7조)
 - 관람료

구분	금액		비고
	개인	단체(20명 이상)	
어 른	2천원	1천원	20세 ~ 64세
청소년	1천원	5백원	13세 ~ 19세
어린이	5백원	3백원	7세 ~ 12세

- 관람권 발급: 별지 제1호서식
- 관람료 일일 징수실적: 별지 제2호서식
- 관람료 면제대상
 - 국민,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

- 공무수행 출입자
 -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
 - 장애등급 제1급~제3급 해당 장애인(보호자 1명 포함)
 - 국가유공자(배우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포함)
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- 표본기증 등 과학관 발전에 기여한 자
 - 과학관에서 추진하는 행사 및 교육에 참여하는 자 등
- 과학관 관람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서 과학관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과 과학관에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, 관람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(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)
- 관람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과학관부지 안에서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,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의 근거, 수탁자의 선정과 협약체결, 위탁기간과 그 기간의 갱신, 운영위탁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, 제12조)
- 그 밖에 관람료의 징수, 과학관의 관리·운영 및 운영위탁에 관한 준용 규정을 둠(안 제1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조례안은 천적생태에 대한 체험 및 학습의 기회와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자연생태계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법을 실천하기 위하여 설립한 거창천적생태

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「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」을 신규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반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

○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

- (1) 안 제1조 ~ 제2조(목적, 명칭 및 위치)는 생태과학관의 설립 목적과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으로써 필요조항이며
- (2) 안 제3조 ~ 제7조(업무 및 기능, 개관 및 휴관, 관람시간, 관람료 및 관람권, 관람료의 면제)는 생태과학관이 수행하는 업무 및 기능, 개관일과 휴관일 지정, 관람시간 지정, 관람료 및 관람권에 관한 사항, 관람료의 면제규정을 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- (3) 안 제8조 ~ 제10조(입관의 제한, 행위의 제한, 관람자의 책임)는 입관 및 행위의 제한사항을 정하고 관람자의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
- (4) 안 제11조 ~ 제12조(판매 및 편의시설의 설치·운영, 운영위탁)는 생태과학관에서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 및 편의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
- (5)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 요지: 해당없음
6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8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〔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안 〕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년 5월 30일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년 5월 30일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년 6월 10일

2. 제안설명 및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업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인구증가 및 농촌 활력화에 기여하고 농업·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임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'귀농인', '귀농세대' 등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함(안 제1조, 제2조)

-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'거창군 귀농정책위원회'의 기능과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 규정함(안 제3조부터 제13조까지)
- 귀농 상담실의 설치·운영과 귀농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내용, 귀농인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함(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)
 - 귀농 상담실 설치·운영(농업기술센터 내)
 - 귀농인 지원사업
 - 귀농인의 농업전문인력화를 위한 기술교육,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
 - 귀농세대에 대한 500만원 이내의 영농정착금 지원
 - 안정적인 귀농 유도를 위한 귀농인의 집 운영
 - 소규모 귀농마을 조성 사업
 - 읍·면 및 작목별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 지원
 - 문화예술인 귀농 유치를 위한 시책사업 발굴 지원
 - 전통집들이 행사 등 현지 주민과 화합을 위한 사업
 - 귀농하기 좋은 마을 육성과 선정 및 시상
 - 귀농인단체 육성 및 지원
 - 귀농인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
- 그 밖에 재정지원에 따른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,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사유, 지원금의 적정 집행을 위한 보고·검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의 신청

및 지원금의 집행·관리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준용 규정을 제4장 보칙으로 규정함(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조례안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업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인구증가 및 농촌활력화에 기여하고 농업·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「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안」을 신규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반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
-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
 - (1) 안 제1장(목적, 정의)은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한 사항으로 필요사항이며
 - (2) 안 제2장(설치, 위원회의 존속기한, 기능, 구성, 위원의 임기, 위원장의 직무, 회의, 의견청취, 간사, 수당 등, 운영세칙)은 거창군 귀농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
 - (3) 안 제3장(귀농 상담실의 설치·운영, 귀농인·귀농단체 지원사업)은 귀농상담실의 설치·운영 목적과 귀농인단체 지원사업을 망라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
 - (4) 안 제4장(지원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등, 사후관리, 준용, 시행규칙)은 지원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사항을 규정하고 사후관리방법 등을 명시한 사항으로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됨

(5)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 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 요지: 해당없음
6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8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